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을 둘 수 있는 내용으로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이 개정(2022.8.3.시행)되는 것에 맞추어, 청년보좌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별정직 5급 상당 1명)을 증원하는 한편,

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·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한시정원 4명 중 1명(5급 1명)은 감축하고, 3명(5급 1명, 6급 2명)은 그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8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,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736명 중 196명(6급 16명, 7급 80명, 8급 58명, 9급 42명)은 감축하고, 540명(5급 4명, 6급 40명, 7급 221명, 8급 158명, 9급 117명)은 그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8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- 다. 합의 :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2. 7. 00. ~ 7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4항 및 제5항 중 “2022년 8월 8일”을 각각 “2023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617”을 “618”로 하고, 별정직 계 “4”를 “5”로 하며,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“3”을 “4”로 한다.

별표 6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제43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3년 12월 31일)

총계	3
일반직 계	3
5급 이하	3

4. 제43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3년 12월 31일)

총계	540
일반직 계	540
5급 이하	540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3조(한시정원) ① ~ ③ (생략)	제43조(한시정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·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<u>2022년 8월 8일까지</u>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둔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2023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.
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<u>2022년 8월 8일까지</u>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.	⑤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3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.
⑥ ~ ⑪ (생략)	⑥ ~ ⑪ (현행과 같음)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2]

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(제38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617</u>	<u>618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별정직 계	<u>4</u>	<u>5</u>	+1
•	•	•	
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	<u>3</u>	<u>4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2